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중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50
----------	-------

발의연월일 : 2026. 9. 11.

발 의 자 : 진중오 · 김정재 · 김성원
김태호 · 서범수 · 박정훈
강대식 · 김태규 · 조경태
최은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종전 검찰청이 수행하던 부패 · 경제 · 방위산업 · 마약 · 내란외환 · 사이버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라 한다)이 2026년 10월 2일 신설됨.

그런데 현행법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중수청 소속 공무원이 퇴직 후 재직 중 관여하였던 사건 등을 변호사로서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음. 이는 중수청이 검찰개혁 취지에 따라 신설되는 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누락된 것이라 볼 수 있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퇴직 후 1년 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한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됨.

이에 중수청장 및 중수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퇴직 후 일정 기간 중수청이 처리한 사건 등에 대한 수임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관예우 관행을 방지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등).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공직임용 제한)”을 “(퇴직공직자의 사건 수임 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수사관으로서”를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로 임용될”을 “1년(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차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2년) 간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한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 목적의 수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재직 중 직접 수사하거나 지휘·감독한 사건에 대하여 퇴직 후 수임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람은 그 사람이 소속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2.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3. 「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4. 「민법」 제703조에 따른 조합

④ 중대범죄수사청 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의 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수사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공직임용 제한) <u>수사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u> <u><단서 신설></u> <u><신 설></u> <u><신 설></u>	제25조(퇴직공직자의 사건 수임 제한 등) ① <u>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1년(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차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2년) 간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한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u> <u>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 목적의 수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② <u>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재직 중 직접 수사하거나 지휘·감독한 사건에 대하여 퇴직 후 수임할 수 없다.</u> ③ <u>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람은 그 사람이 소속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u><신 설></u> <u><신 설></u>	<u>법인 또는 단체가 수입한 사건에 대하여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u> <u>1.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u> <u>2.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u> <u>3. 「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u> <u>4. 「민법」 제703조에 따른 조합</u> <u>④ 중대범죄수사청 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의 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u> <u>⑤ 수사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u>
--	---